

인터넷에서의 정보 생산 및 유통 구조의 변화와 법적 쟁점

이재진(한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1. 문제제기

네트워크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은 전례 없는 언론자유 가능성을 가져왔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가장 표현 촉진적 매체이고 참여적인 시장으로 인정하였고(헌법재판소 2002.6.27. 선고 99헌마480 결정), 인터넷은 기존의 공간과 시간 개념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박익환·장용근, 2005). 그러나 동시에 기술적 발전에 따르는 역효과로 인하여 수많은 법적 쟁점들을 야기하였다. 즉 인터넷은 대단히 역동적이고 다면적인 범주의 커뮤니케이션을 창출하여 새로운 사상의 자유시장(new marketplace of ideas)을 창조하였고(박용상, 2008, 1219쪽)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을 극복하고 민주주의 실현의 기초인 공유, 참여, 결사 그리고 공동의 신념 구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졌으나(Carey, 1989), 갠디(Gandy, 1994)가 일찍이 예견한 바와 같이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라기보다는 불법의 바다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인터넷을 단순히 불법의 바다로 규정하는 것이 옳지 못한 생각이며, 비록 부분적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주장들도 있다(김경년·김재영, 2005; 김은미·이준용, 2006).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들은 우리가 더욱 민주적인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치러야 할 사회적 비용(social cost)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이재진, 2006).

그럼에도 인터넷 포털의 영향력이 크게 신장하였고, 인터넷 댓글로 인하여 자살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인터넷을 통한 사행성 사업이 번창하고,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일이 빈번해 지자 인터넷에 대한 규제 목소리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다. 최근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겠다는 움직임도 이러한 측면을 방증하는 것이다(중앙일보 2008.10.6.).

인터넷상에서의 불법행위 발생의 이유 중의 하나는 인터넷상의 언론의 생산과 유통 과정이 기존의 신문과 방송 매체의 그것과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인터넷의 등장으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 방식에 있어서 기존의 틀이 무너지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인터넷은 기존 매체의 구조적 속성인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을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어 놓았다(박선영, 2000a). 이와 함께 수직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 명확하게 이루어지던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의 구분이,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구조에서는 불가능하게 되었다. 즉 정보 생산자와 소비자는 이전처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이 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콘텐츠의 제작뿐만 아니라 유통과 전과까지 담당하던 구조 하에서는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제공자인 언론

사와 정보소비자인 피해자 사이의 법적 쟁점을 해결하면 되었기 때문에 법적 해결의 당사자는 명확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매개로 한 정보의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는 생산자와 수용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그 역할 또한 혼재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이 법적 분쟁 발생 시 그 해결구조를 대단히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 명확한 분쟁의 양당사자 간의 문제해결 구조에서부터 그 법적 책임의 정도를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다양한 당사자들이 관련되는 다자 간의 문제해결 구조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쟁점들은 예를 들어 개인과 개인 간의 분쟁, OSP의 책임, UCC 저작권 분쟁, 정보에 대한 삭제 권한 여부, 그리고 반론권 적용상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봉착하여 기존의 법조항을 개정하면서 대처해 나가고 있으나 기존 매체와 같이 문제해결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매체의 기술적 발전이 가져온 언론 환경의 변화를 재검토하고, 이로 인한 법적인 분쟁 해결을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매체의 발전에 따른 분쟁의 해결은 어떠한 철학적 바탕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정보 매개 서비스를 담당하는 인터넷 포털의 ‘언론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묵은 기사의 삭제를 둘러싼 논의,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피해구제 방식으로서의 반론권 적용상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2. 인터넷 포털의 언론성에 대한 논의

전술한 바와 같이 한 정보제공자가 정보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전파를 전적으로 담당하던 기존 매체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때 그 책임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묻는 것으로 문제해결이 가능했다. 즉 정보제공자가 생산, 유통, 전파한 정보로 인해 개인의 인격권 침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정보제공자가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미디어와 1인 미디어라고 불리는 블로그가 출현하고 우리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정보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존 매체와 같이 정보제공자로서의 책임을 져야하는가, 그리고 책임을 지게 된다면 어느 정도 져야 되는가, 그 책임으로부터 면책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문제가 복잡한 법적인 쟁점으로 등장하였다. 즉 문제가 된 정보를 직접적으로 생산한 원래 행위자의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정보를 매개하고 전파한 경우에도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특히 인터넷 포털 미디어의 경우에는 기존 언론의 정보를 계약을 통해 수신하고 이를 매개해서 전파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전통적인 정보 생산, 유통, 전파자인 신문과 방송 등과 같은 정도의 책임을 지게 되는가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인터넷 포털 미디어가 언론이냐 아니냐 하는 ‘언론성’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래서 만일 인터넷 포털